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58 발의연월일: 2022. 3. 24.

발 의 자:이종성・구자근・김승수

김형동 · 박대수 · 박덕흠

성일종 · 신원식 · 이명수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신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 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 의료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 정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 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	5
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	
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야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지방의료원의</u>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
	<u>로 본다.</u>
<u><신 설></u>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u>⑥</u> ・ <u>⑦</u> (생 략)	<u>⑦</u> ⋅ <u>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